

육아정책 소식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보육계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국 토론회, 현장 포럼, 현장교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본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 ②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③ 교육과정의 5개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을 연령통합으로 간략화하여 현장 자율성 확대, ④ 교사의 일일교육계획 작성 경감 및 부담감 완화를 통해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이번에 발표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원격 연수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 실시,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 및 부모교육 자료 배포,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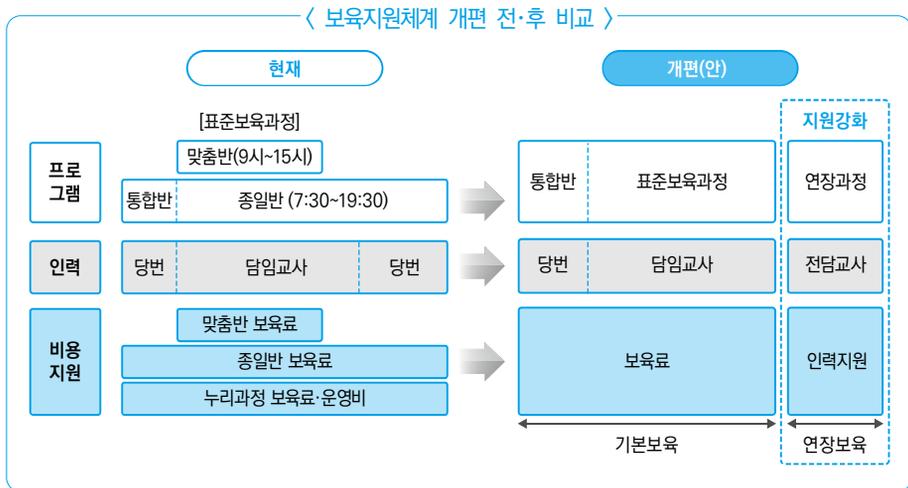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며,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리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올해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구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개편안은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기본보육 후에는 보육교사가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은 올해 4월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육아 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개편준비를 위한 시범사업(19.5월~20.2월)을 진행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보육반을 개설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1,222명)가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횟수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7월부터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여성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연령 관련 기준은 사라지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된 부분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 원
		5~7회	최대 40만 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감염·안전 문제 등*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제도 인지도 제고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총괄에 육아정책연구소가 컨설팅을 주관하고,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간호사회,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올해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해당 산후조리원에 세 차례 현장방문하며, 1차 컨설팅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컨설팅을 계획한다. 2-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를 각각 중간·최종 점검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컨설팅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 www.kicce.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 현장에 특화된 컨설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관리함에 따라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 (안전) 대부분(92.5%) 3층 이상 위치, 신생아 이동 제한으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취약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직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기능을 위탁하였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7~8월부터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을 거쳐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은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현장 적응 문제나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이들의 빠른 현장 적응과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은 만 2년 이상 미종사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과목은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등, 본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기준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일(화) 서울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롯데지주(대표이사 황각규), 초록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과 함께 '나다움을 질문하는 어린이책을 찾아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다움의 개념 및 핵심가치와 도서 선정기준 및 선정도서(안) 등의 결과결과를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다움 어린이책’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긍정하고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어린이책으로, 핵심가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기긍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 다름을 존중하는 다양성’, ‘서로 배려하고 평등하게 연대하는 공존’ 세 가지이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을 위해 전문가와 작가·출판사 추천도서를 포함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도서 1,200권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134개 작품을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안)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도서는 ‘나다움 어린이책 마크’를 책에 새기며, 학교 도서관에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일상 속 책에서 접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나다움 어린이책’이 교육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지난 7월 31일(수)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달라진 제도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4천 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mogef.go.kr)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kihf.or.kr)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0,0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이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말하며,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알림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지난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온 내용으로, 개정된 법안은 '19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분할 없이 최대 5일까지, 그 중 3일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10일까지 유급으로, 필요한 경우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으나 앞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5일까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5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가족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국회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여, 동시 사용 시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